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289호 2018년 12월 13일(목)

경 상 북 도

■ 예 규

○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북도 예규 제1544호) ····· 6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고 시

○ 오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 2018 - 370호) ····· 37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8 - 371호) ····· 40

○ 중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 2018 - 372호) ····· 41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8 - 373호) ····· 44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8 - 374호) ····· 45

○ 김천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4차)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8-375호) ····· 46

■ 공 고

○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 2018 - 1529호) ····· 60

○ 측량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8-1530호) ····· 62

시 군

■ 고 시

○ 경주 천북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18-193호) ····· 64

○ 부석면 일원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해제,지정)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18-1129호) ····· 89

○ 영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18 - 104호) ····· 91

○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18 - 105호) ····· 93

○ 돌담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군위군 고시 제2018 - 97호) ····· 95

○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8 - 195호) ····· 100

○ 군계획시설(교통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진군 고시 제2018-190호) ····· 106

○ 군계획시설(시장)사업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고시
(울진군 고시 제2018-195호) ····· 109

기 타

■ 지시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 ····· 115

◈◈

경 상 북 도

예 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부개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2018년 12월 13일

경상북도 예규 제1544호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상북도(시 · 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의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건설폐기물처리 이외의 용역을 총칭한다.

3. “단순노무용역”이란 원가계산서에「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인건비 기준단가로 적용하는 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른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 · 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 · 파쇄 · 고형화 ·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6. “유사용역”이란 당해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심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용역 계약(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자료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6.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 [별표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

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2.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3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4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나.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 · 양)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용역을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 · 양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호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5" 에 따른다.

④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별표 7" 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 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 · 분할 ·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6" 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⑦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을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9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용역은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입찰 유의서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변조·허위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제13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등에 따르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 이상	추정가격 5억 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능력	1.이행 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창업기업은 7년)	27	12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5
	3.신인도		+5~△5	+5~△5
	계		47	27
Ⅱ.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3
Ⅲ.입 찰 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70
합 계			100	100
Ⅳ.결격 사유	재무위험	부도·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평점= 50-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평점= 70-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 점	
			추정가격 5억 이상	추정가격 5억 미만
이행 실적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창업기업은 7년)	1) 100% 이상	27	12.0
		2) 75% 이상 ~ 100% 미만	24	10.5
		3) 50% 이상 ~ 75% 미만	21	9.0
		4) 25% 이상 ~ 50% 미만	18	7.5
		5) 0% 이상 ~ 25% 미만	15	6.0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2]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 이상	추정가격 5억 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 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창업기업은 7년)	22	12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0
	3.신인도		+5~△5	+5~△5
	계		42	22
Ⅱ.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5	5
Ⅲ.지역업체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3
Ⅳ. 입 찰 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70
합 계			100	100
Ⅴ.결격 사유	재무위험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평점 = 50 − 20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단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평점 = 70 − 20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단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추정가격 5억 이상	추정가격 5억 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 용역이행실적 (금액기준)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은 7년)	1) 100%이상	22	12
		2) 70%이상 ~ 100%미만	18	9
		3) 40%이상 ~ 70%미만	14	7
		4) 10%이상 ~ 40%미만	10	5

가. 이행실적은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청소용역의 경우 평가기준으로 금액 또는 면적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 평가기준 및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
다. 청소용역 실적평가시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제출시	미제출시
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5	0
계	5	0

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당해연도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의 관리소장, 분야별책임자(주임), 기능사(반장), 기능사보(기사)의 기본료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률)

나.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3]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창업기업은 7년)	17	7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5	1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5	-
	4.신인도		+5~△5	+5~△5
	계		37	17
Ⅱ.지역업체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3
Ⅲ.입 찰 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80
합 계			100	100
Ⅳ.결격 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text{○평점(점)} = \text{배점한도}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점	배 점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 이행실적 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17	7
	B. 70%이상 ~ 100%미만	15	6
	C. 40%이상 ~ 70%미만	13	5
	D. 10%이상 ~ 40%미만	11	4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	5
		1인	3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5
		2인	4
		1인	2
	C. 기능사	3인 이상	3
		2인	2
		1인	1
	D. 미보유		0

가.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4]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창업기업은 7년)	27	17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0
	3.신인도		+5~△5	+5~△5
	계		47	27
Ⅱ.지역업체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3
Ⅲ.입 찰 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70
합 계			100	100
Ⅲ.결격 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평점 = 50 − 4×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평점 = 70 − 2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점	배 점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은 7년)	A. 100%이상	27	17
	B. 70%이상 ~ 100%미만	25	15
	C. 40%이상 ~ 70%미만	23	13
	D. 10%이상 ~ 40%미만	21	11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5]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배점한도별		
			20점	15점	10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15.0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 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0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7.0	13.0	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12.0	8.0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1.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 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점)
가. 여성 기업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가) 10년 이상 (나) 5년 이상 ~ 10년 미만 (다) 3년이상 ~ 5년 미만 (라) 3년 미만 (2) 여성고용 우수기업(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가)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0.25 1.5 1.0
나.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9% 이상인 기업	 1.5 2.0 1.0
다. 고용 창출	신규고용촉진	A.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6% 이상인 기업 (나) 5%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0% 이상인 기업 (나) 8%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에 따라 (가) 6인 이상 (나) 3 ~ 5인 B.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1.5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점)
라. 공동 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A .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3)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5 0.75
마. 중소 기업	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소기업 · 소상공인	1.5 1.0
바. 정책 지원	정책지원	A.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B.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 으로 선정된 업체 D. 청년창업기업 (1)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 E. 다자녀 기업 (1) 대표자가 3자녀 이상인 기업 (2) 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직원 중 3자녀 이상인 임직원 1명당 0.5점, 최대 4인 이상 2점(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1.0 0.5 1.0 1.0 1.0 1.0 2.0
사. 납품 지연	지연일수	A.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아. 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 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자.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 관리법 위반정도	A.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차. 고용 노동관련 법령준수	고용노동 관련 법 위반	A.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2.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가.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사.(납품지연), 아.(부정당업자제재) ” 항목만 적용한다.

나.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 공통기준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 · 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3)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라.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5점 ~ - 5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3. “가. 여성기업” 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나. 장애인기업” 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다. 중복평가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5. “다. 고용창출” 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8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6. 12월	‘17. 1월	‘17. 2월	‘17. 3월	‘17. 4월	‘17.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6. “라. 공동수급체 구성” 항 평가

가. 공통사항

1)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청년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일 때에만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본문 제8조제3호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의 구성원별 출자(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4) 중복평가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와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나. 세부항목 평가

1)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2)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청년창업기업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청년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 “마. 중소기업” 항 평가

가. "A.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B.소기업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심사항목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8. “바. 정책지원” 항 평가

가. "A～C" 평가는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나. “D. 청년창업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개시 7년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E. 다자녀 임직원 채용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월 전월부터 기산하여 최근 6개월간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자료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 평가하고, 3자녀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로 한정한다.

라.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9. “아. 부정당업자제재” 항 평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10. “차. 고용노동관련 법 위반” 항 평가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별표 7]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 40% 미만 3) 10% 이상 ~ 25% 미만	3 2 1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 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라. 국제입찰의 경우 '나' 와 같이 배점한도 부여 또는 당해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8]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행실적	3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계기관	별지 제3호서식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서식
신인도	6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신청자 관계기관	
기술능력	7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8	- 부도·파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주거래은행 등)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용 역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예규 제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분 임) 재 무 관 귀하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2. 용 역 자:
3. 제 출 자: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분 임) 재 무 관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입찰일시	
용 역 명	
용역기간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용역구분	일반(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 ) 기타분야(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기 술 능 력			
	신 인 도			
	소 계			
지역업체 참여도				
입 찰 가 격				
결격사유	재 무 위 험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table>
<tr><td rowspan="5">신 청 인</td><td>업체명(상호)</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td></tr>
<tr><td>영업소재지</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사업자번호</td><td colspan="2"></td><td rowspan="2">제 출 처</td><td rowspan="2"></td></tr>
<tr><td>증명서용도</td><td colspan="2">용역 적격심사 신청용</td></tr>
<tr><td>용역범위및기준
(면적, 금액등)</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용역이행
실적내용</td><td>용 역 명</td><td colspan="2"></td><td>구분</td><td colspan="2">일반(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 )
기타분야( )</td></tr>
<tr><td>용역개요</td><td colspan="5"></td></tr>
<tr><td>계약번호</td><td>계약일자</td><td>계약기간</td><td>규 모</td><td>이 행 실 적
비 율</td><td>이 행 실 적
실 적</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증 명 서
발급기관</td><td colspan="6">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td></tr>
<tr><td colspan="6">기 관 명: (인) (전화번호:)</td></tr>
<tr><td colspan="6">주 소: (FAX번호:)</td></tr>
<tr><td colspan="3">발급부서:</td><td colspan="3">담당자:</td></tr>
</table>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인건비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인)

(분 임) 재 무 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 2018 - 370호

오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오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저수지의 노후화된 구조물을 보수·보강하여 재해대비

2. 사업내용 및 구역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해평면 낙산리 일원

나) 수혜면적 : 오로지(181.4ha), 칠창지(13.0ha)

다) 사업내용

〈오로저수지〉

○ 제 체 : 사석설치 A=615㎡

○ 여 수 토 : 벽체증고(L=20.8, H=1.3m), 단면보수보강 A=326.0㎡

○ 측 수 로 : 단면보수보강 A=562.0㎡

○ 방 수 로 : 벽체증고(L=62, H=0.76m), 단면보수보강 A=781.0㎡

○ 감 세 공 : 단면보수보강 A=277.0㎡

○ 취수시설 : 사통받침대 보강, 엑슈레이터 3개소

복통 강관압입(D1,200mm, L=68m)

〈칠창저수지〉

○ 제 체 : 제체 사면정비, 사석설치 A=1,285㎡

농사용도로(L=123.0m, B=2.5m),

맹암거 설치(D200mm, L=113.0m)

○ 여 수 토 : BOX(1.5x1.0), L=10.7m, 개거(0.7x0.5), L=13.5m

○ 취수시설 : 사통설치(D=0.3m, L=8.0m), 복통(강관 D600mm, L=20.2m)

용수개거(0.5x0.5), L=64.0m

3. 사 업 비 : 2,595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18. ~ 2021.

5. 사 업 효 과 : 재해예방 및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 · 김천지사장

7.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 · 김천지사(☎054-712-3452)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18 - 371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기간
				주 소	성 명	
지방 하천 (송평천)	교 량 설 치	〈송평천교〉 · L=94.15m · B= 18.4m 영구:1,998㎡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1342-7번지 외 6필지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지사 (신도시 조성과장)	영구 : 허가일로부터 영구

경상북도 고시 제 2018 - 372호

중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중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중화저수지에 대한 제방보강 사업시행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함.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화마광리 일원

○ 수혜면적 : 164.0ha

○ 주요공사

- 제 방 : 사석보강 L=166m, H=0.85~1.0m

- 물 넘 이 : 방수로확장 L=75m, 감쇄공 측벽증고 L=45m

- 취수시설 : 복통보강 L=51.7m

- 부 대 공 : 현장사무실, 가도 등

3. 사 업 비 : 1,068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2018. 12. ~ 2019. 12. 31.

5. 사 업 효 과 : 제방보강을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7. 기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054-950-0742)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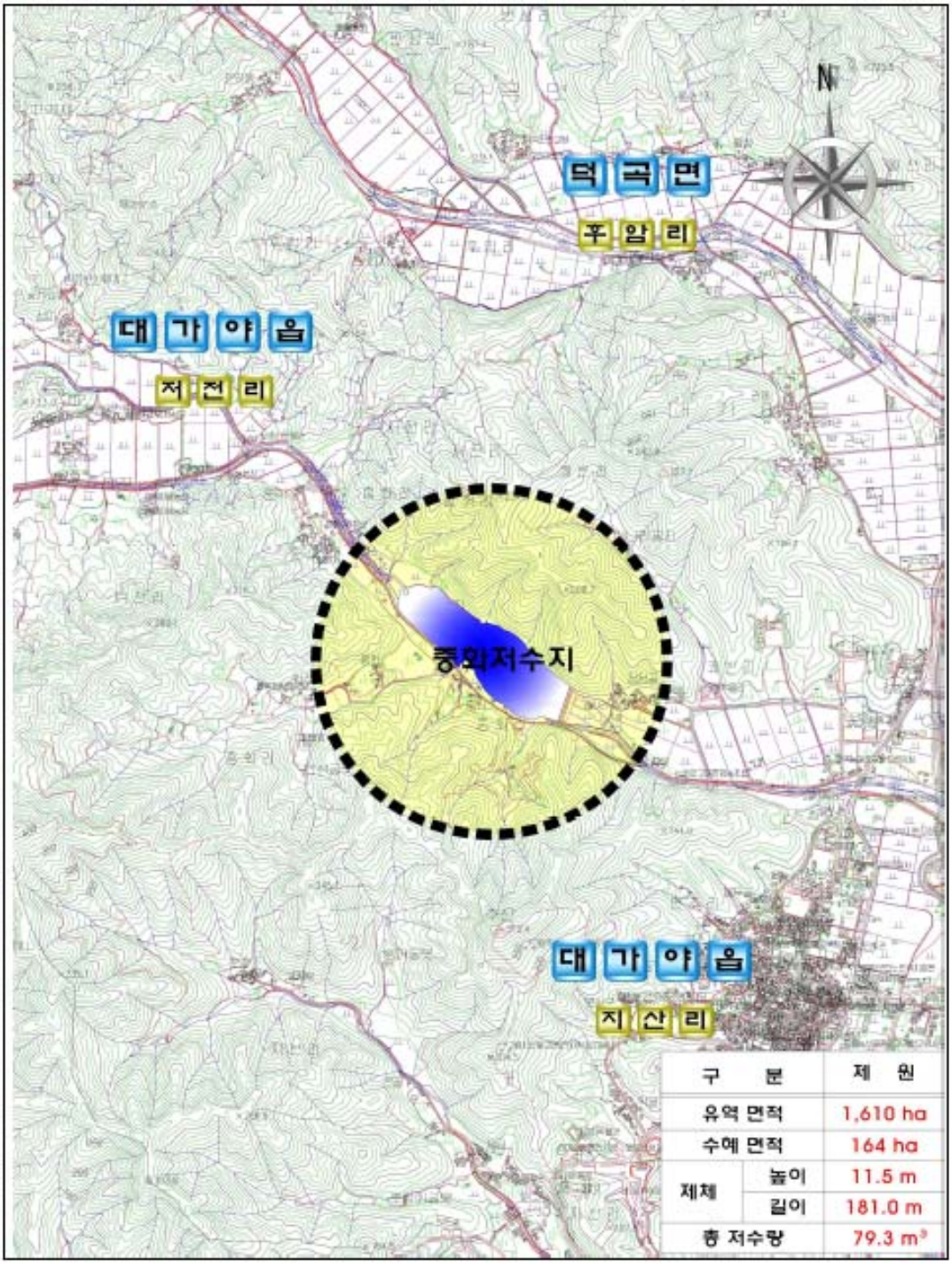

경상북도 고시 제2018 - 373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 하천 (봉곡천)	교 량 설 치	〈부곡교〉 L=30.0m, B=6.2m 영구 250㎡	구미시 부곡동 597-14번지 외 3필지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장 (건설과장)	영구:허가일로부터 영구
	보 설 치	〈봉곡제11낙차공〉 L=18.0m, H=0.7m 영구 526㎡	구미시 부곡동 597-13번지			

경상북도 고시 제2018 - 374 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 하천 (초곡천)	교 량 설 치	〈초곡천교〉 L=54.5m, B=14.0m 영구 790㎡ 일시 239㎡	문경시 하초리 396번지 외 3필지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장 (경제진흥과장)	영구 :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 : 허가일로부터 2020년 12월 31까지

경상북도 고시 제2018 - 375호

김천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13 .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발계획 변경수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 표 자 의 성 명 : 사 장 박 상 우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개발목적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가) 수용인구 : 12,421인 (호당 2.6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수용세대수 : 4,777호 (단독주택 : 136호, 공동주택 : 4,641호)

○ 주택 유형별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90,996	4,777	12,421	단독 : 공동 = 10.8 : 89.2
단 독 주 택	31,369	136	354	-
공 동 주 택	259,627	4,641	12,067	공동주택 면적 비율 60㎡이하 : 60~85㎡ : 85㎡초과 = 26.8% : 52.1% : 21.1%
60㎡ 이하	69,477	1,786	4,644	
60㎡초과~85㎡이하	135,315	2,166	5,631	
85㎡ 초과	54,835	689	1,792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1) 수요추정

구 분	계	가 정 용	상업시설용	학 교 용	공공시설용	기 타
전력(KVA)	18,038	6,703	9,318	1,578	404	35

2)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점에서 공급

나) 도시 GAS 공급계획

1) 수요추정

구분	규 모	단 위 수 요	가스수요량(㎥)	비 고
계	-		13,757	
가정용	4,777호	1.800㎥/호	8,599	
상업시설용	137,649㎡	0.030㎥/㎡	4,129	연면적
공공용	102,942㎡	0.010㎥/㎡	1,029	연면적

2) 공급계획

○ 도시가스공급은 영남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결정

다) 에너지 공급계획

1) 수요추정

구 분	최대열부하 (Gcal/h)	열밀도 (Gcal/㎢, h)	열사용량 (Gcal/년)
에 너 지	39.6	57.6	73,975

2) 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결과에 따라 개별난방으로 결정

4)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구 분	등 급	류 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53	9,431	128,687	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일 반 도 로	계		-	38	8,608	123,823	
	대로	소계	-	2	1,846	48,315	
		2	30	1	245	7,496	
		3	25	1	1,601	40,819	
	중로	소계	-	13	2,808	44,409	
		1	20	4	830	16,929	
		2	15	4	1,070	16,368	
		3	12	5	908	11,112	
	소로	소계	-	23	3,954	31,099	
		1	10	7	1,065	10,861	
		2	8	10	1,255	10,239	
		3	6	6	1,634	9,999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로	소계	-	15	823	4,864	
		1	10	2	190	1,901	
		3	4~6	13	633	2,963	

나) 주차장계획

○ 지구중심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업시설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에 주차장 4개소를 배치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주 차 장	4 개 소	5,977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추후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당초	용 지 보 상	688	-	551	137	-	-	-	
	택 지 조 성	688	-	-	136	275	206	71	

※ 추후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일괄 조정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추후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당초	계	1,434	1	452	286	348	261	86	
	용 지 비	562	-	450	112	-	-	-	
	조 성 비	781	-	-	156	312	234	79	
	기타부대비	91	1	2	18	36	27	7	

※ 추후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일괄 조정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7)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상수도계획

○ 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01)상 2011년 아포읍 1인1일최대급수량 원단위 405ℓ 적용하여 산정

○ 본 사업지구의 상수도 수요량은 1일 5.1㎥/일의 수요량이 예상되며, 상수도 공급은 지자체와 협의 후 구미광역상수도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용수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계획 급수량 산정】

구 분	급수인구(인)	원 단 위(ℓ /일·인)	일최대급수량(㎥/일)	비 고
계	12,421	405	5,031	생활용수

주)김천시 도시현황 여건상 단독주택 세입자는 고려하지 않음

나) 하수도계획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1) 우 수

○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배수관로 및 암거를 매설

○ 우수는 재해저감시설인 저류지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처리계획

○ 저류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반영하여 결정하되 자연친화적인 저류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

2) 오 수

○ 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07.8)상 생활오수원단위 250ℓ /인·일, 일최대전환율 1.25, 지하수 유입율 10%를 적용하여 산정

○ 김천시의 하수처리는 2006. 12월 현재 하수처리용량 81천㎥/일로서 2011년 목표로 아포하수처리장(4.3천㎥/일)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4.3천㎥/일)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오수차집관로를 통해 아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임

구 분		처리인구(인)	생활오수원단위(ℓ /인·일)	일최대전환율	지하수유입율(%)	발생오수량(㎥/일)	비 고
소 계		12,421	-		-	4,270	
주거용지	단 독	354	250	1.25	10	122	
	공 동	12,067	250	1.25	10	4,148	

8) 통신계획

○ KT김천지점에서 공급

구 분	규 모	단 위 수 요	통신수요량(회선)	비 고
계	-	-	20,544	
가 정 용	4,777호	3회선/호	14,331	
상 업 시 설 용	137,649㎡	0.3회선/10㎡	4,129	연면적
공 공 용	102,942㎡	0.2회선/10㎡	2,059	연면적
공 중 전 화	12,421인	1.0회선/500인	25	

9) 기타사항

○ 김천시 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협의의견(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 착 수 일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고시일

○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8년 12월 30일

- 변 경 : 2019년 12월 30일

※ 변경사유 : 사업방식 변경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절차 이행 소요기간 반영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88,363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302,314	43.9	
	단 독 주 택	31,369	4.6	
	공 동 주 택	259,627	37.7	
	근린생활시설	11,318	1.6	
상업시설용지		20,739	3.0	
공공시설용지	소 계	365,310	53.1	
	도로	123,823	18.0	
	보행자전용도로	4,864	0.7	
	주차장	5,977	0.9	· 4개소
	광장	881	0.1	· 1개소
	공원	88,169	12.8	· 6개소(근린공원4, 어린이공원2)
	녹지	50,539	7.3	· 28개소(완충녹지11, 경관녹지17)
	학교	43,687	6.4	· 4개소(초교1, 중교1, 고교1, 유치원1)
	공공청사	2,359	0.3	· 1개소
	사회복지시설	2,914	0.4	· 2개소
	하천	30,943	4.5	· 3개소
	유수지	8,643	1.3	· 2개소
	종교시설	2,511	0.4	· 2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가) 주택용지계획

구 분	블 럭	면 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호)	비 고
계		290,996	4,777	12,421	-	-	2.6인/호

구 분	블 럭	면 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호)	비 고
단 독 주 택		31,369	136	354	150	230	
공 동 주 택		259,627	4,641	12,067	-	-	
60㎡ 이하	소 계	69,477	1,786	4,644	-	-	국민임대
	A-1 BL	69,477	1,786	4,644	170	66	
60㎡초과 ~85㎡이하	소 계	135,315	2,166	5,631	-	-	
	B-1 BL	50,830	814	2,116	180	112	
	B-2 BL	48,520	777	2,020	180	112	
	S-1 BL	35,965	575	1,495	180	112	10년임대
85㎡ 초과	소 계	54,835	689	1,792	-	-	
	C-1 BL	39,835	508	1,321	190	148	
	S-1 BL	15,000	181	471	180	148	10년임대

나)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근린생활시설	계	-	11,318	
	1	송천리 855번지 일원	1,090	
	2	송천리 853번지 일원	1,237	
	3	송천리 310-1번지 일원	3,609	
	4	송천리 222번지 일원	2,747	
	5	송천리 272번지 일원	2,635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구 분	등 급	류 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53	9,431	128,687	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구 분	등 급	류 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일 반 도 로	계		-	38	8,608	123,823	
	대로	소계	-	2	1,846	48,315	
		2	30	1	245	7,496	
		3	25	1	1,601	40,819	
	중로	소계	-	13	2,808	44,409	
		1	20	4	830	16,929	
		2	15	4	1,070	16,368	
		3	12	5	908	11,112	
	소로	소계	-	23	3,954	31,099	
		1	10	7	1,065	10,861	
		2	8	10	1,255	10,239	
		3	6	6	1,634	9,999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로	소계	-	15	823	4,864	
		1	10	2	190	1,901	
		3	4~6	13	633	2,963	

나) 주차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주 차 장	계	-	5,977	
	1	송천리 850번지 일원	1,596	노외주차장
	2	송천리 303-1번지 일원	1,613	노외주차장
	3	송천리 311-3번지 일원	1,794	노외주차장
	4	송천리 275번지 일원	974	노외주차장

다) 공원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88,169	
근 린 공 원	소계	-	82,256	
	1	송천리 824번지 일원	18,294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39,430	
	3	송천리 산85번지 일원	12,630	
	4	송천리 182번지 일원	11,902	
어린이공원	소계	-	5,913	
	1	송천리 311-2번지 일원	2,200	
	2	송천리 267번지 일원	3,713	

라) 녹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50,539	
완 충 녹 지	소계	-	16,533	
	1	송천리 920-1번지 일원	2,956	
	2	송천리 879-2번지 일원	1,595	
	3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1,023	
	4	송천리 904번지 일원	1,239	
	5	송천리 900번지 일원	1,226	
	6	송천리 227번지 일원	733	
	7	송천리 263번지 일원	1,746	
	8	송천리 253번지 일원	1,326	
	9	송천리 314번지 일원	2,629	
	10	송천리 298-1번지 일원	1,221	
	11	송천리 307-2번지 일원	839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경 관 녹 지	소계	-	34,006	
	1	송천리 1395-1번지 일원	105	
	2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121	
	3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7,514	
	4	송천리 산77번지 일원	798	
	5	송천리 914번지 일원	595	
	6	송천리 915번지 일원	1,381	
	7	송천리 908번지 일원	1,959	
	8	송천리 산180번지 일원	88	
	9	송천리 940-1번지 일원	548	
	10	송천리 976-1번지 일원	2,503	
	11	송천리 산55번지 일원	1,655	
	12	송천리 216번지 일원	5,179	
	13	송천리 278-5번지 일원	317	
	14	송천리 265번지 일원	4,976	
	15	송천리 301-6번지 일원	2,139	
	16	송천리 897번지 일원	2,353	
	17	송천리 310-5번지 일원	1,775	

마) 광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광 장	1	송천리 299-2번지 일원	881	

바) 하천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0,943	
하 천	1	송천리 1397번지 일원	6,792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23,320	
	3	송천리 1366-13번지 일원	831	

사) 유수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8,643	
유수지	1	송천리 849번지 일원	4,194	
	2	송천리 301-11번지 일원	4,449	

아) 공공청사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공공청사	1	송천리 857번지 일원	2,359	

자) 교육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3,687	
유 치 원		송천리 278-2번지 일원	968	
초 등 학 교	1	송천리 893번지 일원	15,120	
중 학 교	1	송천리 898번지 일원	13,139	
고 등 학 교	1	송천리 906번지 일원	14,460	

차) 종교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511	
종 교 시 설	1	송천리 264번지 일원	1,300	
	2	송천리 219번지 일원	1,211	

타) 사회복지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914	
사회복지시설	1	송천리 186번지 일원	658	
	2	송천리 848-1번지 일원	2,256	

4)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상 업 용 지	계	-	20,739	
	1	송천리 307-1번지 일원	3,909	
	2	송천리 299-3번지 일원	3,296	
	3	송천리 305-1번지 일원	2,080	
	4	송천리 303-1번지 일원	2,160	
	5	송천리 304-1번지 일원	3,277	
	6	송천리 303-3번지 일원	2,162	
	7	송천리 382번지 일원	3,855	

마.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 면 적 : 688,363㎡

바.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전화:054-880-3923), 김천시 건설개발과(전화:054-420-635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053-603-269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 2018 - 1529호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13. ~ 2018. 12. 27.(15일간)

3. 처분내용 : 사업정지 30일(2차 위반)

4. 위반대상

업체명 (업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비고
㈜포슬	이상욱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2번길 8, 3층(대잠동)	등록기준 미달 (보증보험 미갱신)	**사업정지 30일**	

5. 문의사항

상기 행정처분(사전통지)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시 경북도청 생활경제교통과(☎ 054-880-2664, FAX 054-880-2669)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18-1530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업 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일
㈜태산 (장 범 용)	공공측량 (511-81-19518)	제03-001059호	경북 청도군 화양읍 고수구길 2	2018.12.10
구민토목설계측량 (김 태 진)	일반측량 (374-28-00642)	제04-004291호	경북 경산시 강변서로51길 15-7	2018.12.10
득우토목설계 (권 양 혁)	일반측량 (505-12-97662)	제04-004292호	경북 영천시 삼산길 10	2018.12.10

◈◈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18-193호

경주 천북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주시 천북면 오야·화산리 일원 천북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 주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천북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화산리 일원

다. 면적 : 1,861,708.3㎡(1단계…876,005.3㎡, 2단계…452,714.0㎡, 3단계…532,989.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포항 철강산업 및 울산 자동차 관련부품 제조업을 위주로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 첨단산업 업종을 집단화, 계열화함으로써 경주지역 산업발전을 도모하

고,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

○ 경주지역의 노후화된 산업시설과 부족한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 대두

○ 기존 입주업체의 안전한 기업운영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1-1번지(천북지방산업단지 내)

나. 성 명 : 경주천북기업도시(주) 대표자 김 영 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3항1호 나목에 의한 민간개발

나. 개발기간 : 기정 - 2004. 7. 8. ~ 2018. 12. 31.

변경 - 2004. 7. 8. ~ 2020. 12. 31.

5. 주요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 1단계 : 금속가공(조립금속),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기타운송장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 2단계 : 금속가공(조립금속),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펄프 및 종이,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가구 및 기타

- 3단계 :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목재 및 나무제품, 제1차금속

나.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소 계		1단계 (기준공)	2단계	3단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면적(㎡)	면적(㎡)	
계 (산업시설용지)	1,285,275.7	100.0	623,143.7	348,672	313,460	
금속가공	80,796.3	6.3	38,333.3	42,463	-	
기타기계 및 장비	330,771.9	25.7	263,790.9	41,656	25,3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399,712.3	31.2	160,921.3	127,550	111,241	
목재 및 나무제품	70,922.0	5.5	-	-	70,922	
펄프 및 종이	12,864.0	1.0	-	12,864	-	
고무 및 플라스틱	31,469.7	2.4	31,469.7	-	-	
비금속광물	24,283.8	1.9	6,792.8	17,491	-	
제1차금속산업	217,397.6	16.9	6,661.6	104,764	105,972	
가구 및 기타	1,884.0	0.2	-	1,884	-	
기타운송장비	38,796.1	3.0	38,796.1	-	-	
재생재료가공	38,414.1	3.0	38,414.1	-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28,619.1	2.2	28,619.1	-	-	
식료품제조업	9,344.8	0.7	9,344.8	-	-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 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일 반 공 업 지 역	1,861,708.3	-	1,861,708.3	100.0	

나. 토지이용계획(산업단지 개발계획)

구 분	소 계		1단계 (기준공)	2단계		
	면적(㎡)	구성비(%)	면적(㎡)	면적(㎡)		
계	**1,861,708.3**	**100.0**	**876,005.3**	**452,714**	**532,989**	
산업시설용지	**1,285,275.7**	**69.0**	**623,143.7**	**348,672**	**313,460**	
금속가공	80,796.3	4.3	38,333.3	42,463	-	
기타기계 및 장비	330,771.9	17.8	263,790.9	41,656	25,3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399,712.3	21.5	160,921.3	127,550	111,241	
목재 및 나무제품	70,922.0	3.8	-	-	70,922	
펄프 및 종이	12,864.0	0.7	-	12,864	-	
고무 및 플라스틱	31,469.7	1.7	31,469.7	-	-	
비금속광물	24,283.8	1.3	6,792.8	17,491	-	
제1차금속산업	217,397.6	11.6	6,661.6	104,764	105,972	
가구 및 기타	1,884.0	0.1	-	1,884	-	
기타운송장비	38,796.1	2.1	38,796.1	-	-	
재생재료가공	38,414.1	2.1	38,414.1	-	-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8,619.1	1.5	28,619.1	-	-	
식료품제조업	9,344.8	0.5	9,344.8	-	-	
지원시설용지	**85,029.1**	**4.6**	**66,197.1**	**12,435**	**6,397**	
지원시설	82,594.1	4.5	66,197.1	10,000	6,397	
연구시설(R&D센타)	2,435.0	0.1	-	2,435.0	-	

구 분	소 계		1단계 (기준공)	2단계	3단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면적(㎡)	면적(㎡)	
공공시설용지	**491,403.5**	**26.4**	**186,664.5**	**91,607**	**213,132**	
도로	185,940.9	10.0	78,642.9	32,110	75,188	
주차장	11,503.4	0.6	2,534.4	8,219	750	
공원	26,613.5	1.4	7,881.5	6,853	11,879	
녹지	167,237.6	9.0	41,099.6	24,605	101,533	
오수처리시설	1,520.0	0.1	-	1,520	-	
폐기물처리시설	47,598.6	2.6	47,598.6	-	-	
저류조시설	48,956.8	2.6	7,544.8	17,630	23,782	
수도시설	2,032.7	0.1	1,362.7	670	-	

다. 용도지역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 게재생략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7 (1)	14,168 (700)	185,940.9 (4,715)	12 (1)	6,422 (700)	91,976.5 (4,055)	13	4,254	55,703.7 (292)	12	3,492	38,260.7 (368)
중로	21	8,478	130,858.6 (660)	4	2,581	52,339.7	7	2,745	42,423.2 (292)	10	3,152	36,095.7 (368)
소로	16 (1)	5,690 (700)	55,082.3 (4,055)	8 (1)	3,841 (700)	39,636.8 (4,055)	6	1,509	13,280.5	2	340	2,165.0

주) ( )는 사업지구외 도로 연장 및 면적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조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변경	37개소 (38개소)				14,168 (14,868)						가각포함 1단계 : 78,642.9 2단계 : 32,110.0 (36,533.0) 3단계 : 75,188.0 (7,5480.0)
계	변경	21개소				8,478						1단계 : 38,734.6 2단계 : 24,969.0 (25,337.0) 3단계 : 67,155.0 (6,7447.0)
기정	중로	1	1	19~25	보조간선	986	오야리 1407 (중로2류 4호선 종점)	오야리 1396 (산업단지 입체교차로)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19,035.9㎡
기정	중로	1	2	20~27	보조간선	1,081	오야리 8-2	모서리 산51일원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2단계 : 7,304㎡ 3단계 : 15,35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조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	167	오야리 산12-82	오야리 산12-7 일원	일반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1단계 : 3,606.8㎡
기정	중로	2	2	17.5 ~ 18.5	보조간선	371	오야리 산12-7일원	오야리 산15	일반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3단계 : 6,463㎡ (6,755㎡)
기정	중로	1	4	20	보조간선	348	모서리 산52	모서리 산50	일반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3단계 : 7,038㎡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66	오야리 1396 (소로1류 2호선 종점)	오야리 1396 (중로1류 1호선 경계)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2,649.2㎡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48	왕신리 산266	왕신리 산246일원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2단계 : 2,248㎡
기정	중로	2	5	18	집산도로	118	모서리 산51	모서리 산52	일반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3단계 : 2,19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조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383	화산리 산212일원	화산리 1180-62	일반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3단계 : 5,950㎡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726	모서리 산44	오야리 산19	일반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3단계 : 11,042㎡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833	모서리 산42	모서리 산58-2	일반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3단계 : 11,880㎡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437	오야리 1400 (중로1류 1호선 경계)	오야리 1400 (중로3류 2호선 경계)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5,307.0㎡
기정	중로	3	2	12~18	집산도로	330	오야리 1405 (중로1류 1호선 경계)	오야리 1405 (소로1류 1호선 경계)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4,260.5㎡
기정	중로	3	3	12~18	집산도로	219	오야리 1405 (중로1류 1호선 경계)	오야리 1409일원 (소로1류 2호선 경계)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2,955.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조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692	왕신리 산266	오야리 산18	일반 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2단계 : 4,859㎡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410	모서리 산52	모서리 산52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3단계 : 5,106㎡
기정	중로	3	8	12~16	집산 도로	93	오야리 산8-2	오야리 산16-15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2단계 : 1,400㎡
기정	중로	3	9	12~20	집산 도로	353	오야리 산8-2	왕신리 산267-3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2단계 : 4,676㎡
기정	중로	3	10	13.5	집산 도로	64	오야리 1397 (중로1류 1호선 경계)	오야리 1397 (소로3류 1호선 시점)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919.6㎡
기정	중로	3	7	12~13	집산 도로	369	왕신리 산266	오야리 산16-2일원	일반 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2단계 4,488㎡(4,85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조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계		16개소				5,690						1단계 : 39,908.3 2단계 : 7,141.0 (7,421) 3단계 : 8,03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985	오야리 1399 (중로1류 1호선 경계)	오야리 1406 (중로3류 2호선 경계)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10,102.0㎡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20	화산리 1297 (중로2류 8호선 경계)	오야리 1404 (중로1류 1호선 시점)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11,603.2㎡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451	오야리 1403 (중로3류 3호선 경계)	오야리 1403 (중로2류 1호선 경계)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4,600.7㎡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420	화산리 1298일원 (소로1류 2호선 경계)	오야리 1408 (중로3류 3호선 경계)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4,491.9㎡
기정	소로	1	5	10~12	국지도로	370	오야리 25일원	오야리 19-4일원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2단계 3,711㎡(3,99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조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202	모서리 산50	모서리 산46	일반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3단계 : 2,057㎡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272	모서리 산46	모서리 산42	일반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3단계 : 2,825㎡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21	모서리 산42	모서리 산42	일반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3단계 : 246㎡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57	오야리 1402 (중로3류 3호선 경계)	오야리 1402 (중로1류 1호선 경계)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1,314.2㎡
기정	소로	2	2	8~10	국지도로	500	화산리 1299일원 (소로1류 2호선 경계)	화산리 1299일원 (산업단지 경계)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5,242.3㎡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48	오야리 1395-7 (중로1류 1호선 경계)	오야리 1395-7 (산업단지 경계)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1단계 389.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조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50	오야리 산57-7	모서리 산18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3단계 : 1,339㎡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639	오야리 산16	모서리 산18	일반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2단계 : 3,430㎡ 3단계 : 1,510㎡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5	오야리 산19	오야리 산19	일반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3단계 56㎡
기정	소로	3	1	6~7.5	국지도로	179	오야리 1397 (중로3류 10호선 종점)	오야리 1397 (산업단지 경계)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1단계 1,174.0㎡
기정	소로	3	2	6~6.5	국지도로	161	오야리 1397 (중로3류 10호선 종점)	오야리 1397 (산업단지 경계)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1단계 991.0㎡
계	기정	1개소				700	국도20호선 (오야구간)	중로1-1				(지구외) 3,775㎡
기정	입체 교차로 가감속 구간	5~10				700	국도20호선 (오야구간)	중로1-1	일반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3,775㎡

※ (괄호)는 지구외 도로 합계
※ 비고란은 조성단계 및 면적

나)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개소		11,503.4	-	11,503.4		1단계 : 2,534.4 2단계 : 8,219.0 3단계 : 750.0
기정	1	노외 주차장	천북면 화산리 1295-5번지	901.9	-	901.9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기정	2	노외 주차장	천북면 오야리 산16번지 일원	8,219.0	-	8,219.0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2단계
기정	3	노외 주차장	천북면 오야리 1382-1번지	1,632.5	-	1,632.5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기정	4	노외 주차장	강동면 모서리 산50번지 일원	750.0	-	750.0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3단계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개소			26,613.5	-	26,613.5		1단계 : 7,881.5 2단계 : 6,853.0 3단계 : 11,879.0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소공원	천북면 화산리 1295-4번지	7,881.5	-	7,881.5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기정	2	공원	소공원	천북면 오야리 산18번지	6,853.0	-	6,853.0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2단계
기정	3	공원	소공원	강동면 모서리 산50번지 일원	900.0	-	900.0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3단계
기정	4	공원	소공원	천북면 오야리 산19번지 일원	4,213.0	-	4,213.0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3단계
기정	5	공원	소공원	천북면 오야리 산16-4번지 일원	1,871.0	-	1,871.0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3단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공원	소공원	강동면 왕신리 산246	630.0	-	630.0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3단계
기정	7	공원	소공원	천북면 오야리 산19번지 일원	4,265.0	-	4,265.0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3단계

나)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5개소			167,237.6	-	167,237.6		1단계 : 41,099.6 2단계 : 24,605.0 3단계 :101,533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1386-3번지	2,595.7	-	2,595.7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1단계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2,266.3	-	2,266.3	경주시 고시	1단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393-7번지				제2004-79호 (2004. 12.2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화산리 1296-6번지 일원	17,144.9	-	17,144.9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 12.21)	1단계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화산리 1296-1번지	417.8	-	417.8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 12.21)	1단계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1392-5번지 일원	2,986.4	-	2,986.4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 12.21)	1단계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1388-7번지	3,770.9	-	3,770.9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 12.21)	1단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1390-4번지	4,687.2	-	4,687.2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1386-4번지 일원	6,852.5	-	6,852.5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1단계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1386-5번지	377.9	-	377.9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1단계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강동면 왕신리 산267-2번지 일원	9,593.0	-	9,593.0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2단계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산8-11번지	318.0	-	318.0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2단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산16-1번지	1,048.0	-	1,048.0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2단계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산16-6번지 일원	2,299.0	-	2,299.0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2단계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산15번지 일원	15,691.0	-	15,691.0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3단계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강동면 모서리 산50번지 일원	14,029.0	-	14,029.0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3단계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강동면 모서리 산42번지 일원	43,216.0	-	43,216.0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3단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강동면 왕신리 산264번지 일원	1,990.0	-	1,990.0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3단계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강동면 왕신리 산266-1번지 일원	8,303.0	-	8,303.0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2단계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산18번지	3,044.0	-	3,044.0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2단계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산14-1번지 일원	5,757.0	-	5,757.0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3단계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산14-1번지 일원	5,191.0	-	5,191.0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3단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강동면 모서리 산50번지 일원	13,503.0	-	13,503.0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3단계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천북면 오야리 산19번지 일원	2,026.0	-	2,026.0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3단계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강동면 왕신리 산330-2번지 일원	130.0	-	130.0	경상북도 고시 제2017-170호 (2017.7.3)	3단계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2,219.7	-	2,032.7		1단계 : 1,362.7 2단계 : 670.0
기정	1	수도공급설비	천북면 화산리 1296-7번지	1,362.7	-	1,362.7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배수시설)
기정	2	수도공급설비	강동면 왕신리 산264번지	670.0	-	670.0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2단계 (배수시설)

4) 방재시설

가) 저류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개소			48,956.8	-	48,956.8		1단계 : 7,544.8 2단계 : 17,630.0 3단계 : 23,782.0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천북면 오야리 1386-2번지	7,544.8	-	7,544.8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저류조)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천북면 오야리 산18번지 일원	10,120.0	-	10,120.0	경주시 고시 제2007-10호 (2007.2.22)	2단계 (저류조)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천북면 오야리 산15번지	16,302.0	-	16,302.0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3단계 (저류조)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천북면 오야리 산19번지 일원	7,510.0	-	7,510.0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2단계 (저류조)
기정	5	유수지	저류시설	천북면 오야리 산19번지 일원	7,480.0	-	7,480.0	경상북도 고시 제2009-357호 (2009.8.3)	3단계 (저류조)

5)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천북면 오야리 1394번지	47,598.6	-	47,598.6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1단계

나) 오수처리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질오염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천북면 오야리 산18번지 일원	1,520.0	-	1,520.0	경주시 고시 제2004-79호 (2004.12.21)	2단계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가. 용수공급계획

구 분	용수 수요량(㎥/일)	비 고
계	5,395	
공업용수	4,590	
생활용수	805	

※ 형산강 광역상수관로(D=900㎜)에서 D=300㎜ 관로를 통하여 사업부지내의 배수지(1단계 사업부지 내 배수지 용량 : 2,000㎥/일, 2단계 사업부지 내 배수지 용량 : 3,000㎥/일)로 공급토록 계획

나.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오·폐수 발생량(㎥/일)	비 고
계	2,641	
산업폐수	2,001	
생활오수	640	

※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오수와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자체 1차 처리 후 오수처리장에서 유입 · 처리 후 형산강으로 방류토록 계획,

※ 단지 내 기 분양업체 중 폐수가 발생하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에는 폐수 발생업체에게는 분양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다.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폐기물 발생량(ton/일)	비 고
계	541.770	
생활 폐기물	6.325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535.445 (303.735)	

※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자체 건설계획인 환경센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전량 처리토록 계획하였으며, 매립지의 경우는 향후 10년 이상 유지·관리가 되도록 용량을 확보하였음.

라. 전력공급계획

구 분	전력 소요량(Kwh)	비 고
계	61,010	
지 원 시 설	402	
산 업 시 설	60,608	

마. 통신공급계획

구 분	통신 수요량(회선)	비 고
계	5,290	
산업시설	3,856	
지원시설	213	
공공시설 및 여유량	1,221	

8.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변경없음)

구 분	사업량	개략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11,900	
도로 시설	B=5~10m, L=700m(교량1개소 포함)	5,400	
용수 시설	용수관로 : D=300mm, L=2,300m(m당 22만원) D=200mm, L=1,500m(m당 20만원) 가압장 설치 : ㎡당 25만원 배수지 설치 : (2,000톤/일 1개소)	1,500	
오수 처리 시설	오수처리시설 (2,100㎥/일) 방류관로(D=450mm, L=2,300m)	5,000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고시도 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지원과(☎054-779-626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영주시 고시 제2018-1129호

부석면 일원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해제,지정) 지형도면 고시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된 영주시부석면 일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해제, 지정)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영 주 시 장

1.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석 상수원보호구역	부석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변경

2. 상수원보호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당 초 (해 제)	부석 상수원보호구역	부석면 북지리, 임곡리, 소천리 일원	576,003	전체 해제
변 경 (지 정)	부석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부석면 노곡리, 임곡리, 소천리 일원	2,050,845	전체 지정

3. 상수원보호구역의 수도설치자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영주시장

나. 주소 : 영주시 시청로 1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정 준수

5. 지형도면 및 관련 도서의 열람

관련자료는 영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사업소(☏054-639-72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은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영천시 고시 제2018 - 104호

영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499-38번지 일원에 영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 12. 13.

영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	공공청사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499-38번지 일원	-	증)19,148	19,148	-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관련 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054-330-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고시 제2018 - 10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방지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 12. 13.

영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2.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지구단위계획수립 고시시 해제함)

3.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대상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함

4.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제한행위 내용	비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녹지지역, 관리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가능행위)** - 개발행위허가제한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과 기허가된 개발행위중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 그 밖에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화룡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천시 화룡동 762번지 일원	30,719	
화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천시 화룡동 348번지 일원	95,579	
단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145번지 일원	76,000	

6. 고시 도서 : 게재생략 (영천시 도시계획과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7. 관련 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054-330-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군위군 고시 제2018 - 97호

돌담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산5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돌담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1 3 .

군 위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돌담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도시 · 지역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전원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와 수요에 따라, 친환경 · 저탄소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도시민, 지역민 등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제공하므로 군위군의 농촌지역의 인구 유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도

3. 사업비

○ 사업비 조달계획 : 국고보조와 자부담으로 구분 시행함

구 분	소요예산 (백만원)	비 고 (사용내역)
계	7,320	
○ 보 조	1,800	• 기반시설설치비
- 국 비	1,260	• 국 비(70%)
- 지 방 비	540	• 지방비(30%)
○ 자 부 담	5,520	• 부지확보 및 정지, 주택건축비 포함
- 민 자	5,520	

4. 주요 사업내용

○ 사업예정지 :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산5번지 일원

○ 사업구역 면적 : 91,563㎡ (토지확보 실적 : 85,747㎡/사유지 100% 확보)

○ 입주계획 가구수 : 34가구

- 입주예정자 협약체결 실적 또는 마을정비조합원 수 : 34가구(100%)

- 도시민 유치 : 34가구

- 도시민 비율 : 100%(도시민 입주예정자 가구/입주 계획가구)

○ 사업추진방식 : 입주자주도형

5. 사업시행자

○ 기반시설(돌쌓기 제외) : 군위군수

- 소재지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 주택건축, 기반시설(돌쌓기) : 돌담지구 신규마을 정비조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신천3동 139-8번지

6. 사업시행기간(변경)

○ 사업시행 기간의 변경

- 당초 : 2016년 ~ 2018년

- 변경 : 2016년 ~ 2019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

○ 별첨

8. 관련자료의 열람

관련자료는 군위군청 안전건설과(지역개발담당, 054-380-6362)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주 소	소 유 자
				공부상	편입		
합 계					91,563	-	-
1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산5	임	55,262	33,834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서9 16-18	방윤백 외7인
2		산5-2	임	33,942	25,546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381-72	방윤백 외9인
3		산62	구	860	860	국유지	국토교통부
4		산63	구	198	198		
5		산64	구	3,141	1,285		
6		산65	구	364	364		
7		산66	구	3,538	288		
8		96	전	3,392	3,39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615-22 거평타운 102-1301	류인순 외10인
9		97	과	50	5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2435, 101동3002호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이민화 외1인
10		98	임	40	40		
11		99	과	3,566	3,566		
12		100	과	1,283	1,283		
13		101	전	2,519	2,519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서9 16-18	방윤백 외9인
14		102	임	112	112		
15		103	임	1,917	1,917		
16		104	임	1,058	1,058		
17		157	임	2,843	2,84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주 소	소 유 자
				공부상	편입		
18		158	임	79	79		
19		159	임	93	93		
20		161	전	2,879	2,879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서9 16-18	방윤백 외3인
21		233	과	4,192	4,192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9길 37	최계순 외21인
22		234	과	1,098	1,098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498 고산노변타운 101-708	이경수 외1인
23		235	과	671	671		
24		1353	구	992	342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25		1354	구	992	992		
26		1369	구	1,587	1,487		
27		95-1	답	279	279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615-22 거평타운 102-1301	류인순 외10인
28		95-2	도	45	45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서9 16-18	방윤백
29		96-1	도	213	213		
30		96-2	도	21	21		
31		99-1	도	11	11		
32		99-2	도	6	6		

칠곡군 고시 제2018 - 195호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고시

칠곡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칠 곡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칠곡 군계획시설(대학)로 기결정 된 사항에 대해 노천강당 조성공사를 함에 있어 학교 조성계획의 일부 변경되는 사항을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으로 반영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

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4	대구 예술 대학교	학교 (대학)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860번지 일원	83,194	-	83,194	1992. 6.15	

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83,194		83,194	
교육기본시설				35,715		35,715	
기정	A1	제1 예술관	다부리 861번지 일원	6,060	-	6,060	• 본부, 강의·실습실 및 그 부대시설
기정	A2	제2 예술관	다부리 861번지 일원	5,120	-	5,120	• 강의·실습실 및 그 부대시설
기정	A3	제3 예술관	다부리 861번지 일원	3,200	-	3,200	• 강의·실습실 및 그 부대시설
기정	A4	제4 예술관	다부리 861번지 일원	6,700	-	6,700	• 강의·실습실 및 그 부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A5	제5 예술관	다부리 861번지 일원	4,355	-	4,355	• 식당, 휴게실, 강의 실습실 및 그 부대시설
기정	A6	제6 예술관	다부리 861번지 일원	4,520	-	4,520	• 학생문화센터 및 그 부대시설
기정	A7	제8 예술관	다부리 873번지 일원	5,760	-	5,760	• 강의·실습실 및 그 부대시설
지원시설				11,245	-	11,245	
기정	B1	제7 예술관	다부리 868-1번지 일원	5,825	-	5,825	• 기숙사, 휴게실 및 그 부대시설
기정	B2	체육관	다부리 861번지 일원	2,965	-	2,965	
기정	B3	노천 강당	다부리 868번지 일원	2,455	-	2,455	
기타시설				36,234	-	36,234	
기정	C1	조각 공원	다부리 877번지 일원	1,400	-	1,400	
기정	C2	운동장	다부리 861번지 일원	7,280	-	7,280	
기정	C3	정화조 (1)	다부리 866-1번지 일원	-	-	-	• 지하시설물
기정	C4	정화조 (2)	다부리 산138번지 일원	-	-	-	• 지하시설물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C5	정수장	다부리 861번지 일원	230	-	230	
기정	C6	수위실	다부리 860번지 일원	80	-	80	
기정	C7	연결 복도	다부리 861번지 일원	-	-	-	• 공중시설물
변경	C8	보행자 도로	다부리 861번지 일원	290	증)112	402	
기정	C9	도로	다부리 861번지 일원	4,750	-	4,750	
기정	C10	주차장	다부리 860번지 일원	3,240	-	3,240	
변경	C11	녹지	다부리 861번지 일원	18,879	감)112	18,767	
기정	C12	정수장 (2)	다부리 866-1번지 일원	85	-	85	

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86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대학)사업

- 사업의 명칭 : 대구예술대학교 노천강당 조성공사

다. 사업의 규모

- 전체면적 83,194㎡ 중 4,228㎡

구 분		사업부지		비고
		면적(㎡)	구성비(%)	
총 계		4,228	100.00%	
보행자도로	소 계	112.0	2.6%	
	보행자도로	112.0	2.6%	
조경시설	소 계	2,455.0	58.1%	
	노천강당	2,455.0	58.1%	
녹지 용지	소 계	1,661.0	39.3%	
	조성녹지	1,661.0	39.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학교법인 세기학원 이사장 배인호

- 주소 :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산117-6번지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 성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866	답	1,142	1,142	세**원 외 1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2길			
2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868	답	1,401	1,401	세**원 외 1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2길			
3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867-1	답	618	618	윤*문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3길			
4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867-2	답	777	777	윤*문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3길			
5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861	학	58,207	290	세**원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2길			
합 계				62,145	4,228					

4. 이해관계인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등 관계도서를 칠곡군청 도시계획과(☎054-979-6815)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울진군 고시 제2018 - 190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1980-267호(1980.9.15)로 시설 결정된 울진도시계획도로(소로3-33호선,소로3-34호선,소로3-35호선) 개설사업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제6항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13.

울 진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03-4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울진도시계획시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울진도시계획도로(소로3-33호선,소로3-34호선,소로3-35호선)개설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규 모	사 업 기 간	도시계획 사 업
울진도시계획도로 (소로3-33호선, 소로3-34호선, 소로3-35호선) 개설사업	울진읍 읍내리 일 원	◦노선명 : 울진도시계획도로 (소로3-33호선,소로3-34호선, 소로3-35호선)개설사업 -도로개설 : L=145m,B=6.0m	인가일로부터 ~ 2019.12.31	도로시설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53, 2층

나. 성 명 : 세미주택건설 이범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인가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5필지				3,230	729					
1	울진	읍내	403-52	대	14	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53, 2층	이범관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2	울진	읍내	403-46	대	79	79		울진군			
3	울진	읍내	403-49	답	318	3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53, 2층	이범관			
4	울진	읍내	403-48	답	2,197	20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53, 2층	이범관			
5	울진	읍내	403-47	답	311	10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53, 2층	이범관			
6	울진	읍내	403-14	대	311	1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월변3길 51-14	전연자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준공 후 무상 귀속

8. 실시계획인가 사유 : 도시계획도로 개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 054-789-6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면게재 생략)

울진군 고시 제2018 - 195호

군계획시설(시장)사업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고시

『울진 한우전자경매시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울진군 고시 제2017-204호, 2017.12.21.)된 군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산1번지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부지면적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 12. 13.

울 진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41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시장)

나. 사업의 명칭 : 울진 한우전자경매시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면적

가. 규 모 : A = 8,905㎡ → 8,965㎡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 소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 성 명 : 영덕울진축협조합 대표 박영택(조합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6필지		-	-	35,664	8,905 8,965					
1	매화면	매화리	418-3	답	1,012	1,012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영덕울진 축산업 협동조합			
2	매화면	매화리	419-1	답	985	985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영덕울진 축산업 협동조합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		비 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	매화면	매화리	419-3	답	559	559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영덕울진 축산업 협동조합			
4	매화면	매화리	421	답	988	988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영덕울진 축산업 협동조합			
5	매화면	매화리	421-1	답	502	502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영덕울진 축산업 협동조합			
6	매화면	매화리	422	답	860	860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영덕울진 축산업 협동조합			
7	매화면	매화리	423	답	876	876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영덕울진 축산업 협동조합			
8	매화면	매화리	425-1	도	529	73	-	국(농림 축산 식품부)			
9	매화면	매화리	425-3	도	1,478	19	-	국(농림 축산 식품부)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0	매화면	매화리	425-5	도	477	477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영덕울진 축산업 협동조합			
11	매화면	매화리	425-6	도	26	26	-	국(농림 축산 식품부)			
12	매화면	매화리	425-7	도	155	152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영덕울진 축산업 협동조합			
13	매화면	매화리	430	전	1,346	1,346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영덕울진 축산업 협동조합			
14	매화면	매화리	430-1	전	529	529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영덕울진 축산업 협동조합			
15	매화면	매화리	430-2	전	53	53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영덕울진 축산업 협동조합			
16	매화면	매화리	산1	임	25,289	448 508	-	울진군			

7.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 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1			해	당	없	음				

8.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매화리 산1번지 확정측량 결과 반영

◈◈

기 타

지 시 사 항

도지사 지시사항

- 2018. 12. 11. 확대간부회의 시 -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담당부서
2018-66	○국비예산 확보 관련 교육실시 및 우수직원 우대 •팀장 이상 국비예산 확보위한 교육실시(타시도 사례 벤치마킹, 중앙부처 대응방안 등) •국비확보 실적 분석, 우수실적 거둔 공무원은 인사 우대 방안 강구	예산담당관 인사과
훈시 (67)	○과잉 의전 지양 •도지사 등 수행인력 최소화, 방문기관 등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념	전부서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